

회칙과 규정

인도철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도철학회(Korea Society for Indian Philosophy : 약칭 KSIP)라 이름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본회의 회장이 재직하는 사무실이나 기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인도학 및 인도 철학의 발전과 보급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단체나 개인의 연구 성과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정신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인도 철학, 불교학, 인도학 및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자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뒤에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권리

회원은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받고,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지며, 학회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학술 활동과 추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칙과 총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7조 징계

회원이 제6조의 의무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8조 총회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일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직전 월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 ④ 총회는 사업 계획, 임원 선출,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 ⑤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사, 업무 집행 및 사업 계획 운영,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회 회원(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그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③ 편집 이사가 편집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은 이사 중 조교수급 이상에서 편집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편집위원장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회칙

에 따라 의결하여 결정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학술 대회를 비롯한 주요 활동의 개최와 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그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② 총무이사가 운영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 본회의 모든 간행물에 수록되는 논문, 서평 등에 대해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본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구성

고문 약간 명,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총무 이사 1인, 재무 이사 1인, 편집 이사 1인, 섭외 이사 1인, 학술 이사 1인, 감사 2인, 간사 2인 등으로 한다.

제14조 고문

- ① 고문은 회장이 추대한다.
-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회장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회장이 임기중에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잔여 임기 동안 부회장들 중의 연장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부회장

- ①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들 중에서 약간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는 의무를 지며, 회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4조 ③항에 따라 회장의 지위를 승계한 기간은 제14조 ①항의 연임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7조 이사

- ① 회장은 총무 이사 1인, 재무 이사 1인, 편집 이사 1인, 학술 이사 1인, 섭외 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를 각각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총무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재무 이사는 학회의 수입과 지출을 주관하며,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 ④ 편집 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⑤ 학술 이사는 학회의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하며,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 ⑥ 섭외 이사는 학회의 홍보 및 다른 학회나 연구 단체와의 교류를 주관하며,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 ⑦ 이사는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자자로서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는 이사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학술과 재정 면에서 기여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 임할 수 있다. 단, 학회내의 다른 어떤 직위도 겸임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매 회기 말에 본회의 운영을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해당 회기의 업무 및 재정 결산 내역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간사

- ① 간사는 회장이 이사의 추천을 받아서 2인을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이사회의 위원이 된다. 간사는 학회의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그리고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사업 및 연구 활동

제20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학회의 목적에 따라 시행한다.

- ① 학술상의 연구 조사.
- ② 학술 대회, 강연회, 연구회, 기타 집회의 개최.
- ③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④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 ⑤ 본회의 목적과 관련 있는 타 학회와 교류 활동.
- ⑥ 기타 학회의 발전과 그 목적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21조 학회지

- ① 본회는 연구 활동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회지 『印度哲學』(*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 약칭 KJIP)을 발행한다.
- ② 학회지의 논문은 특집과 연구 논문으로 구성된다.
- ③ 학회지는 연간 3회,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고는 연중 모집하되 별도의 마감일을 두지 않는다.
- ⑤ 투고된 논문은 접수 즉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를 결정한다.
- ⑥ 학술 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은 학회지에 실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단, 학회지에 신고자 할 경우에, 발표자는 완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⑦ 학회지는 회지를 구성하는 최소 원고 분량의 논문 접수로 간행할 수 있다. 만일 최소 분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호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합본으로 간행한다.
- ⑧ 위 조항들의 구체적인 이행은 '학회지 편집 및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22조 내역

본회의 재정은 기금,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비

회비는 개인과 단체의 경우로 나누어 수령하며, 연 회비 또는 평생 회비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회의 재정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논문 심사비

제2차 논문 심사의 경우에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매편당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그 액수는 '학회의 재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회의 회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조 회칙에 따른 모든 회의와 업무 집행의 내용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문서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회칙과 부속 규정 등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회칙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속 규정을 둔다.

-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
- ② 학회지 편집 및 심사 규정
- ③ 학회의 재정 규정
- ④ 학회지의 원고 규정

⑤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제5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제6조 회칙 및 부속 규정 일체는 2001년 2월 28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03년 5월 16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2월 20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1월 30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12월 4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0월 20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 회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회원 관리 업무

- ① 회원들의 인적 사항을 관리하여 학회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학회의 임원, 회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학회 운영을 정상화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 철학, 불교학, 인도학 등의 전문 학자와 인접 학문의 연구자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제2조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업무

- ① 매년 3월과 7월, 11월에 정기적으로 학회지의 원고 접수와 응모 요령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다.

- ② 이사회, 편집위원회 등의 결정 사항을, 각 안건에 따라 이사와 해당 위원 및 회원에게 발송 및 통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3조 학회지의 관리 업무

- ① 이미 출간된 학회지를 보관, 유지한다.
- ② 새로 발간된 학회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제4조 회비의 관리

- ① 정기 회비를 수령하고, 그 내역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3회 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차 통보하며, 4회 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한다.

제5조 학술 대회 관리

- ① 학술 대회는 회원의 학문 활동을 공개하여 그 가치와 노력을 알리고 진작하기 위해서 개최한다.
- ② 학술 대회의 개최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재가를 받고 나서, 이를 즉시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참가자의 접수는 대회 개최일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20일 전에 마감한다.
- ④ 발표 희망자는 약력과 발표 제목, 발표문을 전산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⑤ 발표 자격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비회원의 경우에도 발표할 수 있다.

제6조 학술 대회의 발표 원고에 대한 규정

- ① 원고의 분량은 발표하는 데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되는 분량으로서,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20매~30매를 한도로 한다. 참고 문헌의 목록과 각주는 원고 분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접수된 원고의 내용이나 분량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조정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 ② 대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접수 완료된 원고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자가 제6조의 ①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발표를 취소한다.

- ③ 접수된 원고는 대회 개최일 전까지 제본하여, 일정 부수를 준비한 뒤 학술 대회 당일에 참석자에게 제공한다. 단, 제본이 완료된 자료는 그 즉시 학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지위 및 역할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원에 투고된 모든 형태의 원고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적인 위반 사실 적발 활동과 더불어 위반에 관한 제보를 통해 심의활동을 유지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자의 익명성과 소명권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위반에 관한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위원은 편집위원이 겸임하되 심의 사항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에 선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의결은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 ③ 심의 안건이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회장이 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제3조 심의의 진행

- ① 안건은 위원회 자체적인 조사활동 및 위반에 관한 제보를 통해 상정되고, 이를 근거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이전에 심의 예정 안건의 해당자에게 심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반 사항에 관한 자료와 함

께 해당자의 소명서를 검토한다.

- ③ 심의 사실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해야만 하며, 정당한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심의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행위가 심의를 받는 해당 연구자 및 위반에 관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사항은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조 조치와 징계

본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아래 각 호의 조치와 징계를 실행한다.

- ① 본회의 간행물에 대한 해당 투고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 확정으로부터 5년간 본회에서 간행하는 모든 인쇄물에 대한 투고를 금지한다.
- ② 본회의 홈페이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③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와 징계 내용을 통보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사항과 조치 및 징계 내용을 문서화하여 5년간 보관하며, 최종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연구윤리 위반 내용, 심의 위원 명단과 심의 절차, 위반 사실 확정의 근거, 해당 연구자의 소명에 대한 처리 내용, 위반 사실 확정 후 조치 및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회의 재정 규정

제1조 학회의 모든 재정 내역은 매 회기별로 감사를 거친 뒤, 정기 총회 때 감사가 보고한다.

제2조 입회가 승인된 개인에게는 30,000원, 단체에게는 100,000원을

입회비로 수령한다.

제3조 연회비는 개인과 단체, 일반 회원과 이사를 차별하여 수령한다.

① 개인의 연회비는 30,000원, 단체의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② 이사의 연회비는 1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평생 회비의 하한선은 1,000,000원으로 한다. 일시에 1,000,000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이 이후의 회비 납부의 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다.

제5조 논문 게재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는 지원받은 연구비의 15% 이상을 게재비로 수령하며,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논문의 경우 게재비로 300,000원을 수령한다.

제6조 학회의 이사가 제5조에 따라 이사 회비의 200% 이상의 게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 회비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논문 심사의 위원에게 매편당 20,000원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200자 원고지로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5매 단위로 10,000원씩의 게재비를 수령한다.

제9조 이상에서 규정한 모든 액수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지 편집 및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의 취지

본 학회지는 인도 철학, 불교학, 인도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논문, 기존 연구 서적에 대한 서평, 기타 학계의 연구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 등을 수록한다.

제2조 편집의 성립

- 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상시 접수하며,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학회지는 4개월 정기 간행물로 한다. 원칙적으로 5편 이상의 논문으로 간행할 수 있으나, 그 이하의 논문 편수일지라도 일정한 최소 분량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간행할 수 있다.
- ③ 학회지의 성립 기준인 5편 이상의 원고가 접수되었으나 일정한 원고 분량(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500매)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발행 여부를 의결한다. 단, 발간하지 않기로 의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이사회에 통보한다.
- ④ 5편 미만의 논문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발행 여부를 의결한 뒤에, 그 내용을 즉시 이사회에 통보한다.
- ⑤ 5편 미만의 논문으로 학회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총 원고 분량이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500매 이상이어야 한다.
- ⑥ 학회지에 수록될 논문의 전체 구성은 특집과 연구 논문으로 구분한다. 특집에 해당하는 논문은 학술대회 당시 지정한 주제를 다룬 것에 한한다. 단, 특집에 해당되는 논문이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1편 이하만 수록될 것으로 결정될 경우, 특집과 연구 논문의 구분은 생략한다.

제3조 학회지의 필수 기재 내용

- ① 차례.
- ② 논문, 서평, 기획물 등의 본문.
- ③ 편집위원회의 임원을 비롯한 학회 임원의 명단.
- ④ 학회지의 원고 규정.
- ⑤ 출판의 서지 관련 사항.

제4조 심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규정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 ① 논문에 대한 제1차 심사.
- ② 제2차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의 선정.
- ③ 제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 ④ 논평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⑤ 기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 심사위원의 선발과 운영

- ①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위원을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위촉한다.
- ③ 심사 대상의 논문에 배정된 심사위원의 명단 및 관련 사실은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일체 비밀로 한다.
- ④ 각 1편의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하도록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전임교원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심사의 절차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 ① 논문의 발송 : 논문은, 필자의 이름을 절단한 상태에서, 출력본이나 전산본 양식으로 심사위원 각 3인에게 소정 양식의 보고서와 함께 1부씩 발송한다.
- ② 심사 기간 : 논문의 심사 기간은 매차 15일 이내로 한다. 논문의 송부에서 심사 결과를 수신하기까지의 기간은 매차 총 2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3차까지 가능하지만, 발행일을 엄수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③ 심사 결과 :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소정 양식의 보고서를 통해 심사 내용과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다.
- ④ 결과 처리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내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무기명으로 처리된 심사 평가 함께 해당 필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재심사 또는 논문의 수정이 요청될 경우에는 논문을 다시 발송한다.
- ⑤ 재심사와 수정의 경우 : 논문의 수정 및 재심사가 지연되어 학회지의 발행일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위원과 필자에게 통보한 뒤, 해당 논

문의 게재를 보류한다.

제7조 심사의 기준

- ① 다른 지면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은 원고여야 한다.
- ② 주제나 방법, 결과에 있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 ③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본격적인 학술 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학회지의 원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심사의 평가 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	배점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선명성	20
구성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과 충실성	20
문장 기술 및 용어 사용의 명료성	20
참고 문헌의 인용, 각주 처리 등의 정확성과 일관성	20
연구 결과의 기여도, 초록의 적절성	20

제8조 심사 판정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총점과 등급으로 판정한다.

총점	등급	판정
100~95점	A	게재
94~85점	B	수정 후 게재
84~75점	C	수정 후 재심사
74점 이하	D	게재 불가

- ② 게재 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원고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 결과의 처리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이 판정한 점수의 평균을 상기 제8조 ①항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B와 C의 판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① B(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제출한 논문은 애초 B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상의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소견이 상충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그 처리를 결정한다.
- ②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제출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심사위원이 판정한 점수의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제10조 게재 논문 저작권 양도

- ① 본 학회지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해당 논문을 학회의 홈페이지 및 KCI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서비스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해당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의 소유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상기한 ①과 ②항에 이의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저자는 논문이 게재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본 학회에 즉각 통보하여, 별도의 저작권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2005년 8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한 이 심사 규정은 『인도철학』 제19집 논문의 심사부터 적용한다.

2010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한 이 심사 규정은 『인도철학』 제30집 논문의 심사부터 적용한다.

2014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한 이 심사 규정은 『인도철학』 제42집 논문의 심사부터 적용한다.

2014년 12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한 이 심사 규정은 『인도철학』 제43집의 게재 논문부터 적용한다.

학회지의 원고 규정

1. 분량

논문 한 편의 적정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100매 내외이며, 200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으로서 200자 원고지로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평 또는 논평의 적정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30매 내외이며, 50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성 도구

① 문서 작성은 ‘훈글 2002’ 이상으로 작성하되,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각 행(行)들은 잘리지 않도록 작성할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문단이 바뀔 때만 자판의 Enter 키를 사용해야 하며, 행이 바뀔 때마다 Enter 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문장에서 띄어쓰기는 반드시 한 칸(스페이스바 한 번)으로 통일할 것.

③ 낫표(「」)나 겹낫표(『』)는 반드시 전각이 아닌 반각 문자를 사용할 것.

※ 반각 겹낫표 설정하기(훈글 2010의 경우) : 메뉴에서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 기타”의 순서가 찾아가 ‘겹낫표 입력’을 선택하여 체크함.

3. 원고 제출

① 전산 문서로 작성한 원고 1부.

② 제출할 원본에는 영문 초록과 국문 요약문, 주요어 및 Keyword, 간략한 약력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5. 초록 제출’을 참조할 것.

4. 원고 작성시 준수 사항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일지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를 보류

할 수 있다.

(1) 본문

① 국내 필자의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한다.

②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각각 I, 1, 1), (1), ① 등으로 표시한다. (1)의 경우에는 '글자판 종류'에서 '전각 괄호 문자'를 사용한다.

③ 논문 심사 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기록하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필자를 짐작할 수 있는 '줄고' 등의 언급을 피한다.

④ 출전을 표시할 경우, 아래 (2) 각주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언급하고, 자세한 서지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 문헌에 제시한다. 이에 관한 추가 사항은 '(4) 기타' 참조.

⑤ 제명이 긴 문헌을 빈번히 언급할 경우, 약호를 사용한다. 한역(漢譯) 원전의 경우, 식별 가능한 약칭을 약호로 사용할 수 있다.

(2) 각주

논문 작성의 일반적 약정에 따르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① 출전은 각주에 표시한다. 서구권의 작자인 경우에는 성을, 한국 중국 일본의 작자인 경우에는 성명(성이 3자 이상인 경우는 성)을 표시하고, 괄호 안에 출판 연도를 제시한 후, 페이지 번호를 표시한다. 이에 관한 추가 사항은 '(4) 기타' 참조.

【예】 서성원(1998) pp. 50-51. 現順佐佐木(1987) p. 28. Lamotte (1988) p. 47. Sharma(1960) p. 325.

② 작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의 성명 뒤에 '외'를 첨가하여 표시한다. 번역서의 경우에는 역자의 성명을 사용하지 않고, 음역으로 표기한 원저자의 성명으로 표시한다.

【예】 이태승 외(2004) p. 125.

【예】 다카쿠스(1989) p. 154.

③ 범어, 빨리어 등의 원전을 권, 장, 절 등의 고유한 분류 번호나 단락 번호로 인용할 경우, 그 번호와 판본의 페이지 번호를 약호 다음에 제시한다. 단락 번호가 페이지 번호보다 정밀할 경우,

페이지 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예】 SN II p. 44. Akb-p p. 437. Mbh II.33.29. BrhUp 4.4.5.

④ 대장경을 인용하는 경우, 학계에서 통용되는 약칭이나 약호를 사용하고 제명, 대장경, 권, 페이지, 단 등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TD를 대정신수대장경의 약호로 사용하는 경우)

【예】 發智論(TD 26) p. 923b.

⑤ 인터넷에 전자 출판된 문서 및 CD-ROM을 인용하는 경우, 약호를 사용하고 자세한 URL 정보 및 CD-ROM 정보는 '참고 문헌'에 제시한다. 참고 문헌에서 URL 정보를 제시할 경우에는 검색일을 명시한다.

【예】 SLTP, PTS-CD.

⑥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①②③④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며, '같은 글', '앞의 책'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각주에서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을 나열할 때에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쉼표(,)나 쌍반점(:)으로 구분하여 연결한다.

【예】 MN III p. 283, SN IV pp. 72-75, AN II p. 36. 또는 MN III p. 283; SN IV pp. 72-75; AN II p. 36.

(3) 참고 문헌

논문 작성의 일반적 약정에 따르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하 규정의 구체적인 방식은 【참고 문헌의 예】 참조.

①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서지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 문헌'에서 밝힌다.

② 약호를 사용하여 표시한 범어, 빠리어, 서장어, 한문 원전의 서지 정보를 약호와 함께 먼저 제시한다. 논문과 단행본 등의 문헌은 한국, 일본과 중국, 서구의 순서로 배치하며, 작자의 성을 우선 순위로 하여 각기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 순서로 제시한다.

③ 같은 작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 연도 뒤에 a, b 등을 첨가하여 구분한다. 3인 이상의 공동 저작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뒤에 '외 ○명'을 첨가하여 표시한다. 번역서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④ 번역서의 경우, 번역서에서 표기한 원저자의 성명과 번역서 제명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번역자의 성명을 '아무개 역'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또한 번역서는 가능한 한, 원서의 서지 정보를

제시한다. 이 경우에는 논문 및 단행본의 표기 방식에 따라 []에 제시하며, 번역서의 서지 정보 다음에 배열한다. 편저나 편역일 경우에는 편자의 성명 뒤에 '편'이나 '편역'을 첨가한다.

⑤ 저서의 제목 : 동양어는 반각 겹낫표(『 』)로, 서양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⑥ 논문 제목 : 동양어는 반각 낫표(「 」)로, 서양어는 한글 자판의 따옴표(“ ”)로 표기하고, 각 주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며, 논문이 수록된 페이지 번호를 마지막에 표시한다.

● 참고 문헌의 예

TD: 大正新脩大藏經.

SN: *Samyutta-nikāya*, PTS.

MN: *Majjhima-nikāya*, PTS.

BrhUp: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판본에 따른 서지 정보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약호: 제명, 편(저·역)자, 지명: 출판사(발행처), 발행 연도

Akb-p: *Abhidharmakośabhāṣya*, ed. Pradhan. Patna: K.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67.

(URL 정보 및 CD-ROM 정보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SLTP: Sri Lanka Tripiṭaka Project,

<http://jbe.gold.ac.uk/ibric.html>. 2005년 2월 24일 검색.

PTS-CD: Pali Text Verson 1.0, Buddhist Canon CD-Rom, Dhammakaya Foundation, Khlong luang: 1996.

(논문 및 단행본 등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출판사(발행처)의 지명 앞은 마침점, 지명 다음에는 쌍점(:), 서지 정보의 끝은 마침점을 사용한다. 초판 또는 개정판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지명 앞에 쌍반점(:)으로 구분하여 열거함.)

서성원(1998). 「부파불교에 있어서 존재문제: 실유와 가유」, 『인도철학』 8집. 서울: 인도철학회, pp. 45-62.

이태승·안주호(2004). 『실담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 서울:

글익는들.

現順佐佐木(1990). 『業論の研究』. 京都: 法藏館.

Zahner, R.C.(1973). *The Bhagavad Gitā*.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인 2책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Sharma, Chandradhar

1960 *A Critical Survey of Indian Philosoph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0 *Ethical Philosophy of Indian*. New York: Harper Torchbooks.

(번역서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다카쿠스 준지로(1989). 『불교철학의 정수』, 정승석 역. 서울: 대원정사.

[Takakusu, Junjiro(1956). *The Essentials od Buddhist Philosophy*. 3th ed. Delhi: Motilal Banarsidass.]

(초판 또는 개정판 등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Bhatia, Narain(2003). *Rudraksha*. 1st ed. 2001 : rev. ed. : Mumbai: Central Chinmaya Mission Trust.

보림 지연(2006). 『불교의 꽃 이야기』. 초판 1993 : 재판 : 서울: 도서출판 인아.

(4) 기타

① 쉼표(,), 마침표(.), 쌍점(:), 쌍반점(;) 등의 부호 다음에는 한 칸(자판의 스페이스 바 1타) 띄어쓰기로 통일함.

② 약호 등의 다음 숫자도 한 칸 띄어쓰기로 통일함. 다만 문헌의 단락 번호를 표시할 경우나 공동 저자를 나열할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다.

【예】 대정장 12. Vol. 3. Mbh II.33.29. 이태승;안주호(2004).

③ 논문에서 채택한 각주의 약정, 본문과 각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호는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술하는 도중에 '정승석(2011: 27)'처럼 '저자명(출판 연도):

쪽 번호)’의 형식으로 출처를 표시할 수 있다.

⑤ 괄호 속에 다시 같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Matsumoto(1980): p. 266)”와 같은 기재는 금지하고, 이 경우에는 “(Matsumoto 1980, p. 266)” 또는 “(Matsumoto 1980: 266)”로 기재한다.

5. 초록 제출

심사용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할 국문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2매 내외로 약 500자, 영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8매 내외로 약 2000자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국문 주요어 및 영문 keyword는 각각 5~6개 이내로 제시한다.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철학연구』의 ‘연구윤리 규정’을 채택하여, 그 일부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본 학회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투고, 심사, 편집 등 『인도철학』의 발간에 관계하는 모든 이는 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조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 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 ⑥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 문헌’의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

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 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⑦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 문헌에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문헌들은 '비인용 참고 문헌'으로 구분해야 한다.
- ⑧ 선행 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 문헌의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으로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⑨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시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⑩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조 표절 행위

- ①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

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 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으며, 타인의 연구 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해 동료나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중복 게재

- ①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③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 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④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

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5조 연구 부정 행위와 저작권 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을 소유하자고 하는 저자는 게재 논문에 저작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② 중복 게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 부적절한 집필 행위

- ① 부적절한 출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출간 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 ③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혀서는 안 된다.
- ⑤ 연구 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 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해서는 안 된다.
- ⑥ 참고 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 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⑦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윤리적 집필 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삼자에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④ 심사 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 ⑤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 ⑥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② 교신 저자 또는 책임 저자는 논문의 내용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또한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신 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 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 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진다.
- ④ 저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⑤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의록

운영위원회

2014년 제4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18:00

장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만해관연구동 322실

참석자 : 정승석, 김성철(동국대), 안성두, 이태승, 김호성, 황순일,
강형철(간사).

안건 : 제39회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확정

주요 결의 내용 :

1.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 인도철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개최 장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최 일시는 11월 28일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학술대회는 인도철학회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비는 양측이 분담한다.
3. 학술대회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하고 제1부에서는 2명의 축사와 1명의 기조발표, 제2부에서는 5명의 주제발표.
4. 사회자: 김호성(1부), 이호근(2부), 주명철(2부)
5. 축사: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김선근(인도철학회 고문)
6. 기조발표: 정병조(금강대학교 총장)
7. 주제발표: 정호영(충북대), 정승석(동국대), 문을식(서울대학원대학), 황용식, 이태승(위덕대)

편집위원회

제42집 제1차 편집위원회

일시 : 2014년 12월 8일(월) 16:20

장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만해관연구동 322실

참석자 : 정승석, 안성두, 김성철(금강대), 김호성, 이태승, 강형철
(간사). 나머지 위원은 위임 및 온라인으로 동의

안건 : 1. 제42집 논문심사위원 위촉. 2. 추후 일정.

주요 결의 내용 :

1. 『인도철학』 42집 논문심사위원 위촉 : 21편의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편당 3명씩의 심사위원을 배정.
2. 추후 일정 결의 : 12월 18일까지 1차 심사 완료. 제2차 편집회의는 12월 19일, 제3차 편집회의는 12월 26일 온라인에 의한 동의로 대체.

제42집 제2차 편집위원회

일시 : 2014년 12월 19일(금) 17:00

장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만해관연구동 322실

참석자 : 안성두, 김성철(금강대), 김호성, 김성철(금강대), 정승석,
강형철(간사). 나머지 위원은 온라인으로 위임 및 동의.

안건 : 1. 심사 결과 확인. 2. 게재 가능 편수 및 논문 판정. 3. 게재
순서 확정

주요 결의 내용 :

1. 온라인으로 제42집 논문 심사 결과의 총괄표를 통지. 아래 2의 내용을 합의.
2. 학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게재 확정 7편, 수정 후 게재 7편. 수정 후 재심사 5편, 게재불가 2편. 총15편(전집 심사 기통과 논문 1편 포함)을 게재. 게재율 70% 유지.
3. 특집(39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주제) 4편을 전반, 인도철학 3편과 불교학 8편을 연대 순서로 게재함.
4. 편집 규정을 준수한 최종 수정본은 12월 28일까지 제출. 미제출 논문은 수정 확인 후 제42집에 게재.
5. 심사 규정의 일부를 보완. 제43집부터 적용.
6. 표절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내용을 게재 안내문구에 추가.

제42집 제3차 편집위원회

일시 : 2014년 12월 26일(금) 16:30

장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만해관연구동 322실

참석자 : 안성두, 정승석, 강형철(간사). 나머지 위원은 온라인으로

위임 및 동의.

안건 : 1. 원고 제출 현황 확인. 2.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의 수정 여부 확인. 3. 온라인 논문 공개 동의 및 저작권 양도에 관한 규정.

주요 결의 내용 :

1. 제2차 편집회의 결의 내용대로 15편을 게재.
2. 온라인 논문 공개 동의 및 저작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확정,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

任 員

(가나다 순)

고문	김선근 서행정 이민용 이법산 이지수
회장	정승석(동국대)
부회장	김순금(원광대) 김성철(동국대 경주) 김호성(동국대) 안성두(서울대) 최종남(중앙승가대)
상임이사	김성철(학술이사/ 동국대 경주) 안성두(편집이사/ 서울대) 이태승(총무이사/ 위덕대) 최종남(재무이사/ 중앙승가대) 황순일(섭외이사/ 동국대)
이사	강성용(서울대) 곽만연(동아대) 권기현(위덕대) 권서용(부산대) 김명우(동아대) 김성철(금강대) 김완두(미산 스님, 승가대) 김호성(동국대) 문을식(서울불교대학원대) 박경준(동국대) 박문성(가톨릭대) 박창환(금강대) 박효엽(경북대) 서은숙(동국대) 서종순(원광디지털대) 심재관(금강대) 안양규(동국대 경주) 우제선(동국대) 이거룡(선문대) 이호근(강릉대) 임승택(경북대) 임근동(한국외대) 정준영(서울불교대학원대) 정진일(독일 괴팅겐 학술원) 조성택(고려대) 허일범(진각대) 황순일(동국대)
감사	허남결(동국대) 황정일(보조사상연구원)
간사	강형철(동국대)

편집위원장 겸 연구윤리위원장

안성두(서울대)

편집위원 겸 연구윤리위원

김성철(경주 동국대)

김성철(금강대)

김호성(동국대)

서종순(원광디지털대)

이태승(위덕대)

이호근(강릉대)

정승석(동국대)

정진일(독일 괴팅겐 학술원)

해외 편집 자문

Editorial Advisory Board(Names in alphabetical order)

Augustine Thottakara (Dharmaram College,
India)

Kamalākar Mishra (Banaras Hindu Univ.
India)

Noritoshi Aramaki (Ryukoku Univ. Japan)

Lambert Schmithausen(Hamburg Univ. Germany)

Mark Siderits (Illinois State Univ. U.S.A)

印度哲學 제42집

2014년 12월 31일 발행

ISSN 1226-3230

발행인 정승석

발행처 인도철학회(印度哲學會)

편집실 100-715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만해관연구동 322호
Tel: 02-2260-3133

<http://krindology.com>